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50인 미만 기준 :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며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 등급)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가입자가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하여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 성립·소멸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

○ **가입제한**

- 피보험자가 가입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특정업종 가입제한

1.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4.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가능. 단, 실업급여 수급은 보유중인 사업자 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수급가능)

